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9. 3.

제230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111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1. 8. 24.
- 라. 회부일자 : 2021. 8. 24.

### 2. 제안이유

위임사무의 상위 근거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일괄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제5조(위임사무) [별표] 정비
  - 1) 「약사법」 개정에 따른 사무명 및 근거 법령조항 정비(안 별표 제3호)
  - 2)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사무명 및 근거 법령 조항 정비(안 별표 제4호)
  - 3) 「의료법」에 따른 사무명 및 근거 법령 조항 정비(안 별표 제6호)

-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조항 정비(안 별표 제27호)
- 5)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위임사무로 신설(안 별표 제28호)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약사법」 제20조, 제21조의2, 제69조의4, 제75조, 제75조의2
- 2)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7조
- 3) 「의료법」 제40조, 제59조
-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6
-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3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 가. 개정이유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사무권한 및 근거조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사무위임 조례 [별표]의 위임사무 목록과 근거법령을 일괄 정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음.

## 나. 주요내용

### 1) 제5조(위임사무) [별표] 개정

연번	사무명	구분	개정내용
1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변경	안 별표 제3호 (가, 아)목
2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변경	안 별표 제4호 (가)목
3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변경	안 별표 제6호 (다, 라)목
4	의약품 유통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	변경	안 별표 제27호 (가~다)목
5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b>신설</b>	안 별표 제28호 (가, 나)목

※ 세부내용은 붙임 2. 「신·구 조문 대비표」 참조

## 다. 검토결과

### 1)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됨

- 본 조례안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됨.

### 2) 개정된 조례의 내용 또한 약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목적과 범위에 부합함

- 개정 조례안은 약사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목적과 범위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바,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약사법**

[시행 2021. 7. 20.] [법률 제18307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1조의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① 약국개설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수인이 종전의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수인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거나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은 그 양수일부터 종전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69조의4(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2017. 10. 24., 2020. 4. 7.>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6조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아니한 경우
- [본조신설 2015. 12. 29.]

**제75조(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의약품등의 제조업 관리자 또는 약국의 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제조업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약국개설자에게 각각 그 관리자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75조의2(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 개설자가 제4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 개설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22.]

# 의료기기법

[시행 2021. 7. 20.] [법률 제18319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16조(수리업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리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제조인증·제조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를 받은 자가 자기 회사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신고를 하려는 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자기 회사가 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수리업신고의 수리에 필요한 대상 품목, 기준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수리”로, “제조업허가”는 “수리업신고”로, “생산관리”는 “수리관리”로, “제조업자”는 “수리업자”로 각각 본다. <개정 2016. 12. 2., 2018. 12. 11.>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0. 2. 18.>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2020. 2. 18.>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취급자에게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판매업신고를 한 자가 임대업을 하는 경우
3.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신조절용 의료기기 및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되는 자가진단용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2호·제4호·제5호, 제12조 및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판매 또는 임대”로, “제조업허가”는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로, “제조업자”는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 각각 본다. <개정 2018. 12. 11.>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 의료법

[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12. 20.>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0. 8. 11.>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4. 15.] [총리령 제1650호, 2020. 10. 14., 일부개정]

[별표6]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제62조제7호 관련)

## Ⅲ. 의약품 도매상

### 1. 적격업소의 지정 및 사후관리

#### 가. 지정신청

- 1) 이 기준에 따른 적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도매상은 별지 제78호서식의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1)에 따라 이 기준의 실시상황을 평가받으려는 자는 평가 신청일 이전에 15일 이상 이 기준을 적용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나. 적격업소의 지정

- 1)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목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 의약품유통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평가신청 자료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은 1)에 따른 검토 결과를 기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격 여부를 판정하고, 적합하다고 판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이하 "적격업소"라 한다)로 지정하고 별지 제79호서식의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적격업소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3) 2)에 따른 실태조사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조사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 다. 사후관리

- 1) 시장·군수·구청장은 적격업소로 지정된 도매상에 대해 3년에 1회 이상 실시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도매상에 대해 적격업소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3) 시장·군수·구청장은 1)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변경되거나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도매상에 대해서는 따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 [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일부개정]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붙임 2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위 임 사 무			위 임 사 무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	⋮		⋮	⋮	
3.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3.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개설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 「약사법」 제20조 제2항		가. 개설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포함)	○ 「약사법」 제20조 제2항, 제21조의2	
⋮	⋮		⋮	⋮	
아.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 같은 법 제75조		아. 관리자 등의 변경명령, 시정 명령	○ 같은 법 제75조, 제69조의4, 제75조의2	
⋮	⋮		⋮	⋮	
4.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4.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 「의료기기법」 제17조		가.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	○ 「의료기기법」 제16조, 제17조	
⋮	⋮		⋮	⋮	
6. 의료기관(의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6.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	⋮		⋮	⋮	
다. 의원 등의 휴업·폐업신고의 수리	○ 「의료법」 제40조		다. 휴업·폐업신고의 수리	○ 「의료법」 제40조	
라. 의원 등의 업무개시명령	○ 같은 법 제59조		라. 업무개시 명령	○ 같은 법 제59조 제2항	
⋮	⋮		⋮	⋮	
27. 의약품유통관리에		보건	27. 의약품유통관리에		보건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사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대한 다음의 사무		소장	대한 다음의 사무		소장
가. 의약품유통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지정신청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6(의약품유통관리 기준)의 제7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가. 의약품유통관리 기준 실시상황 평가신청서 지정신청	○ 「 <b>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b> 」 <b>별표6(의약품유통품질 관리 기준)의 Ⅲ.의약품 도매상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b>	
나. 실태조사 및 적격업소 지정서 발급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6(의약품유통관리 기준)의 제7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나. 실태조사 및 적격업소 지정서 발급	○ 「 <b>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b> 」 <b>별표6(의약품유통품질 관리 기준)의 Ⅲ.의약품 도매상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b>	
다. 사후관리 (적격업소의 지정 취소 및 시정 등)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6(의약품유통관리 기준)의 제7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다. 사후관리 (적격업소의 지정 취소 및 시정 등)	○ 「 <b>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b> 」 <b>별표6(의약품유통품질 관리 기준)의 Ⅲ.의약품 도매상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b>	
<b>28. &lt;신설&gt;</b>			<b>28.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b>		<b>등장</b>
			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5항	
			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 같은 법 제6조의3 제4항	